

창원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가단1157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6. 11.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8,408,542원과 그중 27,459,177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020. 8. 10.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 29. 접수 제1090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한 바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 1) 원고는 피고 A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다.
- 2) C과 피고 A는 별지 목록에 기재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다. C과 피고 A는 2019. 11. 29.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A, 근저당권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11. 29. 접수 제109027호로 피고 B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각 피고 A의 1/2 지분에 관한 부분을 각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가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아래 표에 적은

바와 같다. 이에 따르면 피고 A는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종류	순번	내용	가액(원)
적극 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120,000,000
	2	경남 함안군 D 토지	203,962,000
	3	경남 함안군 E 토지	
	4	경남 함안군 F 건물	167,670,000
	5	순번 2, 3, 4 토지 및 건물에 있는 기계기구	30,000,000
	소계		521,632,000
소극 재산	1	G은행 일반자금대출	30,000,000
	2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대출	27,000,000
	3	기업은행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230,000,000
	4	기업은행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70,000,000
	5	H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58,328,767
	6	G은행(가야) 2014. 12. 17. 대출	8,000,000
	7	G은행(상호본부총괄) 2018. 6. 8. 대출	2,200,000
	8	I캐피탈 2019. 11. 7. 대출	1,227,000
	9	G은행(대산) 2016. 11. 18. 대출	3,250,000
	10	주식회사 J 2019. 7. 8. 가압류청구금액	26,678,085

종류	순번	내용	가액(원)
	11	피고 B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0,000,000
	12	K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0,000,000
		소계	596,683,852
적극재산 - 소극재산			-75,051,852

[인정 근거]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용,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66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위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채무자인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 B에게 이를 채권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피고 B는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인 2021. 6. 15. 및 2021. 6. 16. 제출한 서면들에서 선의,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것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음을 항변하나, 위 서면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피고 B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범욱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남 김해시 [] 동
[도로명 주소]

경남 김해시 []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15층 공동주택(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호 84.974㎡

대지권의 표시

토지권의 표시: 경남 김해시 [] 대 26987㎡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26987분의 50.42

-- 이 상 --

청 구 원 인

1. 원고의 보증과 소외 금융기관의 대출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L을 경영하던 피고 A의 보증의뢰에 따라 피고 A가 소외 G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 <표1> 과 같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G은행에게 발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A
 는 아래 <표2> 와 같이 G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표1. 보증내역>

(단위 : 원)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일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M	27,000,000	2017. 5. 17.	2020. 5. 15.	일반자금대출	G은행 철서공단지점

<표2. 대출내역>

(단위 : 원)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M	27,000,000	G은행 철서공단지점	2017. 5. 17.	30,000,000

2. 원고의 대위변제

가. 그런데 L을 경영하던 피고 A의 2020. 1. 16.경 부실(신용관리정 보등록등)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G은행의 보증채 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 <표3> 과 같이 G은행에게 대위변제하였으 므로 원고는 피고 A로부터 그 대위변제 합계액을 상환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표3. 대위변제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 금	이 자	구상합계액
1	M	2020. 6. 4.	27,000,000	459,177	27,459,177
합계			27,000,000	459,177	27,459,177

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 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율은 아래 <표4> 와 같습니다.

<표4. 지연손해금율 내역>

기 간	이율(연)	비 고
대위변제일부터 - 현재까지	8%	금리자율화에 따른 원고 소정율

3. 미수위약금

신용보증기금법 제 35조 및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신용보증약정 제 3조에 의하면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율과 위약금은 아래 <표5> 와 같습니다.

<표5. 지연손해금율 내역>

(단위 :%, 원)

순번	보증번호	발생금액	대상기간	일수	요율	미수금액
1	M	27,000,000	2020. 5. 16.-2020. 6. 3.	19	2.0	28,100
합계		27,000,000				28,100

4. 법적절차비용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 10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피고 A가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바, 원고가 피고 A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중 미회수된 잔액은 현재 금 921,265원입니다.

5. 구상채권 합계

그러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27,459,177원과 위 미수 위약금 28,100원, 위 법적절차비용 921,265원등 합계금 28,408,542 원(위 대위변제금 27,459,177원 + 위 미수위약금 28,100원 + 위 법적절차비용 921,265원)과 위 대위변제금 27,459,177원에 대하여 2020. 6.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